

## 물질안전보건자료 (MSDS)

MSDS 번호: AA00155-000000222

### Tetrachloro ethylene 99.9 %

Data of issue: 2022-08-29

Revision date: 2020-01-16

Version: 3.0

#### 1.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##### 가. 제품명

- Tetrachloro ethylene 99.9 %

##### 나.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

- 용도 : 자료없음  
- 사용상의 제한 : 자료없음

##### 다. 제조자/공급자/유통업자 정보

###### ○ 제조자 정보

- 회사명 : (주)리가스  
- 주소 : 경영기획부  
- 전화번호 : 0429346900  
- 긴급 전화번호 : 0429346900

###### ○ 공급자/유통업자 정보

- 회사명 : (주)리가스  
- 주소 : 경영기획부  
- 전화번호 : 0429346900  
- 긴급 전화번호 : 0429346900

#### 2. 유해성·위험성

##### 가. 유해성·위험성 분류

- 고압가스 : 액화가스  
- 피부 부식성/피부 자극성 : 구분2  
- 발암성 : 구분1B  
- 특정표적장기 독성(1회 노출) : 구분3(마취영향)  
-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: 구분2

##### 나.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

###### ○ 그림문자



###### ○ 신호어

- 위험

###### ○ 유해·위험 문구

- H280 고압가스: 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음  
-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 
- H336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 
- H350 암을 일으킬 수 있음  
- H411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독함

###### ○ 예방조치문구

###### 1) 예방

- P201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.  
- P202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.  
- P261 가스/미스트/증기/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.

- P264 취급 후에는 취급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.
- P271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십시오.
- P273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.
- P280 보호장갑·보호의·보안경·안면보호구를(을) 착용하십시오.

**2) 대응**

- P302+P352 피부에 묻으면: 다량의 물로 씻으시오.
- P304+P340 흡입하면: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십시오.
- P308+P313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: 의학적인 조치/조언을 받으시오.
- P312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/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.
- P321 응급처치(눈에 들어갔을 때는 다량의 흐르는 물로 세척, 피부에 접촉했을 때는 다량의 흐르는 물로 세척,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로 이동, 먹었을 때 구토를 유발할지에 대하여 의료진의 조언을 구함)를 하시오.
- P332+P313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: 의학적인 조치/조언을 받으시오.
- P362+P364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십시오.
- P391 누출물을 모으시오.

**3) 저장**

- P403+P233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.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십시오.
- P405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십시오.

**4) 폐기**

- P501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/용기를 폐기하십시오.

**다. 유해성·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·위험성**

- 자료없음

**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**

화학물질명	관용명 및 이명	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	함유량(%)
테트라클로로에틸렌	퍼클로로에틸렌 ; 퍼클로로에틸렌 ; 1,1,2,2-테트라클로로에틸렌 ;	127-18-4 / KE-33294	99.9%

**4. 응급조치 요령**

**가. 눈에 들어갔을 때**

- 눈을 문지르지 마시오.
-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적어도 15분 동안 눈을 씻어내시오.
-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.

**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**

-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벗고 즉시 적어도 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어내시오.
- 오염된 피복은 재사용 전에 (충분히) 세탁하십시오
- 오염된 피복과 신발을 제거하고 격리시키시오.
-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.
- 증상(발적, 자극 등)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병원으로 가시오.
- 취급 후 철저히 씻으시오.
- 환자를 씻길 경우 장갑을 착용하고 오염된 피복의 접촉을 피하십시오.

**다. 흡입했을 때**

- 다량의 증기나 미스트에 노출되었을 경우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십시오.
- 필요에 따른 조치를 취하십시오.
-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.
- 호흡이 불규칙하거나 멈출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산소를 공급하십시오.

**라. 먹었을 때**

- 구토를 유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사의 조언을 받으시오.
- 즉시 물로 입을 씻어내시오.
-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.

**마.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**

- 오염상황을 의료관계자에게 알려 그들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.
- 노출 및 노출 우려시 의학적인 조치, 조언을 구하십시오.

## 5. 폭발·화재시 대처방법

### 가. 적절한(및 부적절한) 소화제

- 분말소화제, 탄산가스, 일반 포말소화제, 분무
- 직사주수를 사용한 소화는 피하시오.
- 화재 진압 시 방화복, 소방용 구조헬멧, 소방용 안전화, 소방용 안전장갑, 공기호흡기를 착용하시오.

### 나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

- 암을 일으킬 수 있음
-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독함
-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
-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
- 인화성 액체 및 증기

### 다.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

- 관계인 외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시오.
- 대규모 화재인 경우 무인방수장치를 활용하며, 여의치 않을 경우 물러나서 타도록 내버려 두시오.
- 물질 자체 또는 연소 생성물의 흡입을 피하시오.
- 소방서에 알리고, 화재 위치와 유해한 특징을 알려주시오.
- 위험 없이 할 수 있다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이동시키시오.

## 6.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

### 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

- 누출된 물질을 만지지 마시오. 작업자가 위험 없이 누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면 중단시키시오.
- 누출지역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용기를 이동하시오.
-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
- 밀폐된 공간에 출입하기 전에 환기를 실시하시오.
-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작업하고 바람을 안고 있는 사람을 대피시키시오.

### 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

- 누출량이 많은 경우 119나 환경부, 지방환경관리청, 시·도(환경지도과)에 신고하시오.
- 누출물이 하수시설, 수계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시키시오.

### 다. 정화 또는 제거 방법

- 기준량 이상 배출 시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에 배출 내용을 통지하시오.
-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하시오.
- 다량누출 : 저지대를 피하고 바람과 반대방향에 있도록 하시오. 누출물질의 처리를 위해 제방을 축조하여 관리하시오.
- 폐기물관리법(환경부)에 의해 처리하시오.

## 7. 취급 및 저장 방법

### 가. 안전취급요령

- 공학적 관리 및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여 작업하시오.
- 모든 안전 주의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.
- 사용 전에 사용설명서를 입수하시오.
-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(증기, 액체, 고체)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, 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.
-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는 작업의, 작업화를 사용한다.

### 나. 안전한 저장 방법

- 누출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시오.
-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밀폐하여 놓으시오.
- 서늘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저장하시오.
- 손상된 용기는 사용하지 마시오.
- 용기에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지 마시오.

## 8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
### 가. 화학물질의 노출기준,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

- 국내노출기준

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TWA : 25 ppm, STEL : 100 ppm
- **ACGIH노출기준**
  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TWA 25 ppm (170 mg/m3) STEL 100 ppm (685 mg/m3)
- **생물학적 노출기준**
  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최종 날숨(end-exhaled air) 중 Tetrachloroethylene : 3ppm(작업전), 혈액 중 Tetrachloroethylene : 0.5 mg/L(작업전)

**나. 적절한 공학적 관리**

- 가스, 증기, 미스트, 흠 또는 분진이 발생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공기 중에 이들 함유농도가 보건상 유해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기를 권장함

**다. 개인 보호구**

- **호흡기 보호**
  - 사용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하시오.
  - 호흡보호는 최소농도부터 최대농도까지 분류됨.
- **눈 보호**
  -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와 비상세척설비(샤워식)를 설치하시오.
  -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보안경을 착용할 것.
- **손 보호**
  -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안전 장갑을 착용할 것.
- **신체 보호**
  -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보호복을 착용할 것.

**9. 물리화학적 특성**

가. 외관	<b>C2Cl4</b> <b>Tetrachloro ethylene</b>
- 성상	액체
- 색	무색
나. 냄새	에테르 냄새
다. 냄새역치	50 ppm
라. pH	자료없음
마. 녹는점/어는점	-22 ℃
바.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	121 ℃
사. 인화점	자료없음
아. 증발 속도	자료없음
자. 인화성 (고체, 기체)	자료없음
차.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/하한	- / -
카. 증기압	18.5 mmHg (25 ℃)
타. 용해도	0.015 g / 100 ml (25 ℃)
파. 증기밀도	5.8 (공기=1)
하. 비중	1.6 (물 = 1)
거. N-옥탄올/물 분배계수	3.4
너. 자연발화온도	자료없음
더. 분해온도	자료없음
러. 점도	0.839 cP (25 ℃)
머. 분자량	165.83

**10. 안정성 및 반응성**

**가.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**

- 권장된 보관과 취급시 안정함.

**나. 피해야 할 조건**

- 혼합금지 물질 및 조건을 피하시오.

**다. 피해야 할 물질**

- 자료없음

**라.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**

- 자료없음

**11. 독성에 관한 정보**

**가.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**

- (호흡기)
  - 자료없음
- (경구)
  - 자료없음
- (눈·피부)
  -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

**나. 건강 유해성 정보**

- 급성 독성
  - \* 경구 독성
    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LD50 3005 mg/kg Rat (ECHA)
  - \* 경피 독성
    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LD50 5000 mg/kg Mouse (IUCLID)
  - \* 흡입 독성
    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LC50 25.7 mg/L/4 hr (3786 ppm 4h) Rat (ECHA)
-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
  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토끼를 이용한 피부 자극성 시험 결과 자극성이 관찰됨 흥반 : 4, 부종 1.7 OECD Guideline 404 (ECHA)
-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
  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토끼를 이용한 안 자극성 시험 결과 중정도의 자극을 일으킴 (CERI, NITE)
- 호흡기 과민성
  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자료없음
- 피부 과민성
  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마우스를 이용한 피부과민성 시험결과 약한 피부과민성이 관찰됨 OECD Guideline 429, GLP (ECHA)
- 발암성
  - \*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
    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유독물질 발암성 구분1B
  - \* IARC
    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Group 2A
  - \* OSHA
    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해당없음
  - \* ACGIH
    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A3
  - \* NTP
    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R
  - \* EU CLP
    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Carc. 2
- 생식세포 변이원성
  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시험관 내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시험결과 대사활성계 유무에 상관없이 음성OECD Guideline 473, 복귀돌연변이시험결과 대사활성계 유무에 상관없이 음성,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유전자 돌연변이시험결과 대사활성계 유무에 상관없이 음성OECD Guideline 476 생체 내 포유류 적혈구를 이용한 소핵시험결과 음성OECD Guideline 474, 염색체이상시험결과 음성 (ECHA)
- 생식독성
  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랫드를 이용한 생식독성시험결과 중추신경계 영향, 탈모, 창백, 경직, 호흡증가 등이 관찰됨 (NOAELpaternal toxicity=100 ppm)(EPA OTS 798.4700, GLP) 이러한 영향은 비특이모계영향으로 고려되며 생식 또는 교미율 등과 관련된 영향은 관찰되지 않음 발달독성/최기형성시험결과 태아 발달에 영향이 관찰(자궁 감소, 태아 및 태반 체중, 흉부 척추 골화 등)되었으나 용량반응 관련성이 없어 해당물질로 인한 영향으로 고려하기 어려우므로 골격형성과 관련된 영향은 발달독성으로 인정하기 어려움(NOEC=250 ppm)(ECHA)
- 특정 표적장기 독성 (1회 노출)

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사람에서 두통, 현기증, 불쾌감, 극도의 피로감, 신체 허약, 졸음, 발한, 혈압 저하, 격렬한 오한, 반사 소실, 근이완, 시각 장애, 천호흡 등 중추 신경계 장애 및 폐수증을 일으킴 (NLM)

○ **특정 표적장기 독성 (반복 노출)**

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마우스를 이용한 반복경구독성시험결과 신장 병변부종, 지방 변성 및 괴사 등, 염증, 항문 또는 성기 자극, 탈모, 복부팽만 등이 관찰됨 LOEL=390 mg/kg bw/day 반복영향으로 인한 독성이 고농도에서 관찰되어 분류기준에 적용되지 않음 (ECHA)

○ **흡인 유해성**

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자료없음

○ **고용노동부고시**

\* **발암성**

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발암성 1B

\* **생식세포 변이원성**

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해당없음

\* **생식독성**

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해당없음

**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**

**가. 생태독성**

○ **어류**

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LC50 5 mg/l 96 hr Salmo gairdneri

○ **갑각류**

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EC50 3.5 mg/l 48 hr Elminius modestus (ECHA)

○ **조류**

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EC50 3.64 mg/l 72 hr Chlamydomonas reinhardtii (ECHA)

**나. 잔류성 및 분해성**

○ **잔류성**

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log Kow 2.53

○ **분해성**

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자료없음

**다. 생물 농축성**

○ **생물 농축성**

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BCF 77.1 (NITE)

○ **생분해성**

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0% 21 day (ECHA), BOD: 11 (%) (NITE)

**라. 토양 이동성**

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자료없음

**마. 오존층 유해성**

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해당없음

**바. 기타 유해 영향**

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자료없음

**13. 폐기 시 주의사항**

**가. 폐기방법**

- 소각 처리할 것.
-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 처리할 것.
-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,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할 것.

**나. 폐기시 주의사항**

-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(사업장폐기물배출자)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, 폐기물처리업자,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생처리 하는 자,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함.
- 폐기물관리법상 규정을 준수할 것.

**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**

**가. 유엔번호 (UN No.)**

- 1897

**나. 유엔 적정 선적명**

- TETRACHLOROETHYLENE

**다.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**

- 6.1

**라. 용기등급(IMDG CODE/IATA DGR)**

- III

**마. 해양오염물질**

- 해당됨

**바.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**

- 지역 운송 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름.
- DOT 및 기타 규정에 맞게 포장 및 운송.
- 화재 시 비상조치의 종류 : F-A (General fire schedule)
- 유출 시 비상조치의 종류 : S-A (Toxic substances)

**15. 법적 규제현황**

**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**

- **작업환경측정물질**  
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테트라클로로에틸렌)
- **노출기준설정물질**  
- 해당됨 (테트라클로로에틸렌)
- **관리대상유해물질**  
- 해당됨 (0.1% 이상 함유한 테트라클로로에틸렌(특별관리물질))
- **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**  
- 해당됨 (1% 이상 함유한 테트라클로로에틸렌)
- **제조등급지물질**  
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해당없음
- **허가대상물질**  
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해당없음
- **PSM대상물질**  
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해당없음
- **허용기준설정물질**  
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해당없음

**나.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**

- **등록유예기간이 없는 화학물질**  
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168
- **중점관리물질**  
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CMR
- **CMR(발암성, 생식세포변이원성, 생식독성) 및 CMR 우려 물질**  
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해당없음

**다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**

- **유독물질**  
- 해당됨 (0.1% 이상 함유한 테트라클로로에틸렌)
- **배출량조사대상화학물질**  
- 해당됨 (0.1% 이상 함유한 테트라클로로에틸렌)
- **사고대비물질**  
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해당없음
- **제한물질**  
- 해당됨 (0.1% 이상 함유한 테트라클로로에틸렌)

- 허가물질
  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해당없음
- 금지물질
  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해당없음

#### 라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

- 위험물에 해당되지 않음

#### 마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

- 본 제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[별표1]에 의해 지정폐기물 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됨.

#### 바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
-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
  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해당없음
- EU 분류 정보
  - \* 확정분류 결과
    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H351,H411
- 미국 관리 정보
  - \* OSHA 규정 (29CFR1910.119)
    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해당없음
  - \* CERCLA 103 규정 (40CFR302.4)
    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45.3599 kg 100 lb
  - \* EPCRA 302 규정 (40CFR355.30)
    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해당없음
  - \* EPCRA 304 규정 (40CFR355.40)
    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해당없음
  - \* EPCRA 313 규정 (40CFR372.65)
    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해당됨
- 로테르담 협약 물질
  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해당없음
- 스톡홀름 협약 물질
  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해당없음
-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
  - [테트라클로로에틸렌] : 해당없음

### 16. 그 밖의 참고사항

#### 가. 자료의 출처

-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10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130호(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)에 근거하여 국내 관련 규제 법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작성함.
- 본 MSDS는 KOSHA, NITE, ECHA, NLM, SIDS, IPCS, NCIS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음.

#### 나. 최초 작성일자

- 2022-08-29

#### 다.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

- 3 회, 2020-01-16

#### 라. 기타

- 이 정보는 근로자 건강, 환경, 안전을 보호하고자, 현재 가용할 수 있는 DB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음.









